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21

발의연월일: 2020. 7. 30.

발 의 자:이명수・박덕흠・윤두현

김예지 · 최춘식 · 조경태

박성중 · 이철규 · 김형동

이주환 · 성일종 · 최형두

홍문표 · 추경호 · 김성원

태영호 · 서정숙 의원

(179]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 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·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,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점,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,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 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,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, 운영계획, 활동내역 등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(안 제8조의3 신설).
- 나.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,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(안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).
- 다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위원 수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위원회의 운영 현황 공개) ①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설치된 경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

- 1.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- 2.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
- 3.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
- 4.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, 운영 실적 등 활동내역
- 5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, "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"를 "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.

2.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(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제12조제3항 본문 중 "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"을 "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"로, "외부 전문가"를 "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나 정보공개의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"로, "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"를 "외부 전문가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"을 "위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)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같은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임명·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위원회의 운영 현황 공
	개) ①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
	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기관의 장은 위원회(위원회, 심
	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
	고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
	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
	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
	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
	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
	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설치된
	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
	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
	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
	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
	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
	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
	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
	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
	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
	<u>다.</u>
	1.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	2.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

제10조(정보공개의 청구방법) ① 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(이 하 "청구인"이라 한다)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청구인의 성명·주민등록번 1. ------생년월일--호·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·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 <단서 신설>

ЪÌ	) 회
<i>/</i> H	I뫽

- 3.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 현황
- 4.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, 운 영 실적 등 활동내역
- 5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 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세10조(정보공개의	청구방법) ①
	,

-----(전화번호·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. 다만,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, 대표자의 <신 설>

2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- (생 략)
  -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 의 장이------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2분의 1은 해 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 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 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 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.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

성명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 에 준하는 번호,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 다.

- 2.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(본인 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 $\cdot$  ② |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 $\cdot$ 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-----위원은 국가기관등 --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 을 가진 외부 전문가-----외부 전문가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-----

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	④위원
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	
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	
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